

제 6 편 부 록

| 제1절 | 대한잡사회 정관 (2018년 현재)

| 제2절 | 대한잡사회 기구조직 (2020년 현재)

제 6 편 부 록

제1절 대한잡사회 정관 (2018년 현재)

정관 2018. 12. 2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회는 사단법인 대한잡사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이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6번지에 둔다. (2018.12.21)

제3조(목적) 이회는 국내잡사업의 진흥과 회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12.21)

제4조(공고) 이회에서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2장 사 업

제5조(사업) 이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잡사업의 기술보급, 경영지도, 지원 등 잡사업진흥을 도모하는 사업
2. 잡사업자금의 운용관리 (1998.12.22개정)
3. 누에인공사료의 생산 공급 및 기술교육사업
4. 잡사지의 발행과 잡사업에 관한 홍보 및 통계·조사자료 등의 발간보급 사업
5. 잡사업에 관한 국제교류, 협력 및 잡사류의 수출입관련 사업
6. 잡사업 운영상 필요한 각종알선 및 판매사업
7. 잡상산물의 생산 및 구매, 가공, 판매, 유통 등에 관한 사업 (1996.5.14신설)
8. 건물, 토지의 유지관리와 부동산중 일부의 임대사업
9. 잡사업에 관한 문화보존 및 잡사박물관 운영사업과 잡사관련 관광농원, 잡사관련 체험시설 설치 운영사업 (2005.3.25개정)

10. 누에동충하초의 종균생산보급 및 재배, 수매, 유통 등에 관한 사업(1998.12.22신설)
11.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 (1998.12.22개정)
12. 부동산업·건물신축분양업 (2015.2.12.신설)
13. 기능성양잠 연구사업(2018.12.21 신설)
14. 회원복리증진사업(장학사업 및 의료지원사업)(2018.12.21 신설)
1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6조(회원구성) 이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로 구성 한다.(2018.12.21)

1. 사단법인 한국양잠연합회 (2011.11.11개정)
2. 사단법인 한국상모협회
3. 사단법인 한국잠종협회
4. 사단법인 한국생사수출입조합

제7조(회원가입 및 관리)

① 이회에 입회코자 하는 자는 제6조 각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18.12.21)

② 이회의 회원은 본회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2018.12.21신설)

제8조(회원의 권리) 이회 회원은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이회 업무 수행에 의한 제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9조(회원의 의무) 이회의 회원은 회비부담, 정관 및 제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3조의 목적달성과 이회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2018.12.21.)

제10조(회원제재) 회원이 이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또는 회원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때는 아래 각 호와 같이 제재 또는 제명한다. (2018.12.21 신설)

1. 경 고 (이사회)
2. 자격정지 1년 이내(이사회)
3. 제 명 (총회)

제11조(탈퇴) 회원의 탈퇴는 회원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할 수 있으며 탈퇴 후는 제 권리를 상실한다.

제4장 임원 및 직원

제12조(임원)

① 이 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2018.12.21)

1. 회 장(대표이사) 1인
2. 비 상 임 이 사 8인 이내
3. 비 상 임 감 사 2인

②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2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단, 고문은 회장이 추대하며 임기는 회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2018.12.21)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비상임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사외이사는 제외) (2018.12.21.)

② 비상임이사는 8인 이내로 구성하며, 비상임이사 8인 중 4인은 정관 제6조에서 정한 각 회원 단체장이 이사가 되고, 단체장 임기 중에 한하며, 단체장 직위상 실시 이사회에서도 자동 해임된다. 나머지 이사 3인은 한국양잠연합회에서 정 하되, 각 지역 및 도 간에 소외감 없이 지역별로 안배하여 추천한다(중부권. 영 남권. 호남권)

③ 비상임이사중 1인은 잠업에 관한 학식과 행정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사외이사 로 하며,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018.12.21)

④ 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거규약으로 정한다. (2005.3.25신설)

⑤ 비상임이사 중 임원선거규약에 의한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에서 자동 해임되며, 결격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단체에서 비상임이사를 선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18.12.21)

⑥ 임원직(이사,감사)과 대의원직을 겸임할 수 없다. (2018.12.21신설)

⑦ 고문은 총회에서 추대 한다.

제14조 (임원의 의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 중에서 호선된 자가 회장이 선출될 때 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회의 운영상 중요사항을 의결 집행하고 총회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 회 업무 및 재산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⑤ 감사와 고문은 이사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책임)

① 이 회의 임원은 법령,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정관, 규약, 규정 또는 총회 및 이사회 의 의결을 준수하고 이 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② 이 회 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회나 타인에 게 손실을 가한 때에는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단, 상근회장의 해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에게 해임 의결에 앞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2018.12.21)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4년,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17.3.14개정) 단, 사외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하며 임기 중이라도(제15조 2항 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 의결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2018.12.21)

② 임원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 로 한다.

제17조(임직원의 보수) 임직원의 보수 및 급여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18조(직원의 직무) 직원은 회장의 명을 받아 직제에 소정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제5장 회 의

제19조(회의의 종류 및 소집)

① 이 회의 회의는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및 이사회, 각종 위원회로 한 다. (2018.12.21)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 다 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총회의 목 적 및 소집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소집을 회장에게 요구할 때에 는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회소집요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내에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한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

어 이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④ 필요시에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018.12.21)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 한다. (2018.12.21)

1. 한국양잠연합회 선출대의원	13명
2. 한국상모협회 선출대의원	3명
3. 한국잠종협회 선출대의원	3명
4. 한국생사수출입조합 선출대의원	3명
계	22명

제21조(대의원 선임)

① 대의원은 각 단체에서 ②항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를 제반서류를 갖춰 추천하고 본회의 심사를 통해 선임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출서류:별지2) (2018.12.21)

② 대의원은 각 단체의 회원으로서 그 업을 직접하는 자라야 한다.(2018.12.21) 다만, 잠업사업자금의 융자금 상환기일이 6개월 이상 초과된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③ 선임된 대의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거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기타의 경우로 결원이 된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서 보선하며 이 경우 새로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018.12.21)

제22조(회의소집통지) 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전(문서발송일 기준)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장소 등을 서면으로 이사, 감사 및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8.12.21)

제23조(총회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개정 및 기본재산의 운영 (1999.12.7개정)
2. 임원선임, 해임 및 임원의 보수
3. 회원의 제명(2018.12.21.)
4. 회비분부 징수방법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6. 업무실적 및 결산보고
7. 대의원 선거규정의 제정 및 개정
8. 이 회의 해산 및 이에 관련된 사항
9. 기타 회장이 이 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이사회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직제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2. 총회 부의사항
3. 자금의 차입
5. 수지예산의 항간전용 및 예비비 사용 및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제재 (2018.12.21)
7. 각종 위원회 구성 (2018.12.21)
8. 기타 회장이 업무 수행상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회의성립 및 의결)

- ① 총회는 재적 과반수로, 이사회는 재적 3분의 2이상으로 성립하며, 의사는 출석자의 과반수로 의결 한다. (2010.4.9개정)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8.12.21)
- ②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있어 미결인 때에는 재차 표결에 부하되 다시 미결인 경우에는 그 의안을 폐기한다.

제26조(의사의 특례)

- ① 총회는 제22조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의안에 한하여 심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출석대의원 과반이 동의하는 의안은 예외로 한다. (2018.12.21)
- ② 이사회는 미리 통지한 사항 이외라도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간략 사항은 서면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회의의 대리) 대의원 및 이사는 동일회의 구성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서면(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 및 대리권은 1인에 한하며 해당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8.12.21)

제28조(승인사항)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9조(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기본재산) 이 회의 기본재산은 회비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기타수입으로 조성한다.

제31조(경비 및 회비)

① 이 회의 자산은 기본금, 회비찬조금 부대업무에서 발생한 수익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양잠연합회 회비
2. 한국상모협회 회비
3. 한국잠종협회 회비
4. 한국생사수출입조합 회비
5. 기타 회비

제32조(사업계획 등)

① 이 회의 사업실적, 수지결산, 사업계획, 수지예산은 회계년도마다 작성하되 매년 2월 말까지 총회에 보고 또는 의결을 받아야 한다. (2005.3.25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나.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 다.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2010.4.9개정)

제33조(특별회계) 이 회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준예산) 회계년도 개시 후 총회에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이 심의 의결될 때까지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3개월분에 해당한 경비를 전년도 예에 준하여 준예산으로 집행하고 그 기간 내에 본예산을 심의 확정하여야 한다. (99.12.7개정)

제7장 해산 및 청산

제35조(해산)

① 이 회의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4분의 3이상이 해산을 결의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010.4.9개정)

② 이 회 해산시의 재산은 회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에 한하여 처분하되 재적 대의원 4분의 3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996.5.14개정)

부칙

제36조(시행일) 이 정관은 농수산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7조(경과조치) 1980년도 정기총회는 정관 제19조 규정에 불구하고 12월중에 개최할 수 있다.

제38조(경과조치) 이 정관이 발효한 날로부터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은 잔여 기간에 불구하고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39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개정당시의 회장은 과도기의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잔여 임기 까지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이 정관 개정당시의 임원은 잔여임기에 불구하고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40조(경과조치)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정하는 대의원 선거규정은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제정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한다.

제41조(경과조치) 이 정관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4.11.29)

제42조(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6.5.14)

제43조(대의원 선거규정 폐기) 1980. 12. 18 제정된 대의원 선거규정은 정관개정과 동시 폐기 한다. 단, 제18대 대의원은 제21조의 개정된 대의원 선임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1996.5.14)

제44조(경과조치)

①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임시총회에서 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2003년 2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② 1998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2002년 2월 정기총회까지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001년 2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③ 이 정관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9.12.7)

제45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5.3.25)

② 이 정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8.3.21)

③ 이 정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9.6.12)

- ④ 이 정관은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0.4.9)
- ⑤ 이 정관은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1.11.11)
- ⑥ 이 정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하며,
단, 변경된 임기 적용은 차기 임원부터 적용한다. (2014. 3. 18)
- ⑦ 이 정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5. 3. 2.)
- ⑧ 이 정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7. 3.14)
- ⑨ 이 정관은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8. 12.21)

제2절 대한잡사회 기구조직 (2020년 현재)

1. 역대 대한잡사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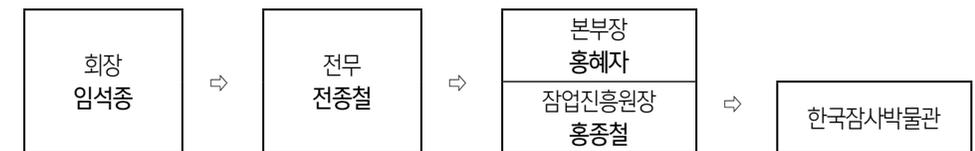
초대 회장 김동경(金東經)	2대, 6대 회장 권헌길(權憲吉)	3대 회장 홍성하(洪性夏)	4대 회장 홍재근(洪在根)
			
1946. 7. 8 ~ 1949.11.24	1949.11.25 ~ 1951. 1.23 1959.11.12 ~ 1961. 3.16	1951. 1.23 ~ 1953. 9. 5	1953. 9. 5 ~ 1957.11.23
5대 회장 임철호(任哲鎬)	7대 회장 권기동(權奇東)	8대 회장 윤광빈(尹廣彬)	9, 13, 14대 회장 이원영(李元榮)
			
1957.11.23 ~ 1959.11.12	1961. 3.16 ~ 1963. 3. 6	1963. 3. 6 ~ 1966. 3.19	1966. 3.19 ~ 1968. 3.27 1973.11.30 ~ 1976. 5. 7 1976. 5. 7 ~ 1978.11.30
10, 11대 회장 신영목(申榮睦)	12대 회장 장영진(張永鎭)	15대 회장 김원태(金元泰)	16, 17대 회장 정태암(鄭台岩)
			
1968. 3.27 ~ 1969. 3.27 1969. 3.27 ~ 1970. 3. 4	1970. 3. 4 ~ 1973.11.30	1979. 3.12 ~ 1981.12.31	1982. 3.18 ~ 1984.11.30 1984.11.30 ~ 1987.12. 8

18대 회장 김문헌(金文憲)	19대 회장 권영하(權寧河)	20, 21대 회장 최연홍(崔然泓)	22대 회장 임수호(林秀浩)
			
1988. 4. 2 ~ 1990.11.30	1990.12. 3 ~ 1993.11.30	1993.12. 9 ~ 1996.11.30 1996.12. 1 ~ 1999.11.30	1999.12. 7 ~ 2003. 2.28
23, 24대 회장 심재익(沈載益)	25대 회장 박동철(朴東哲)	26, 27대 회장 윤장근(尹莊根)	28대 회장 강용수(姜龍秀)
			
2003. 3.13 ~ 2006. 2.17 2006. 3. 1 ~ 2009. 2.28	2009. 3. 1 ~ 2012. 2.28	2012. 3. 1 ~ 2015. 2.28 2015. 3. 1 ~ 2017.10.16	2017.12. 5 ~ 2019. 2.28
29대 회장 임석중(林奭鍾)			
			
2019. 3. 1 ~ 현재			

2. 대한잠사회 임원 및 대의원

구 분	성 명	구분	성명
회장	임석중	대의원	김기현(양잠)
이사	송기택(한국양잠연합회장)	"	박시우(양잠)
"	배명열(한국상모협회장)	"	한영철(양잠)
"	강경모(한국잠종협회장)	"	조상현(상모)
"	권영기(한국생사수출조합이사장)	"	강대훈(상모)
"	이순준	"	박영준(상모)
"	류강선(사외이사)	"	손경식(잠종)
대의원	최재성(양잠)	"	송진영(잠종)
"	조영준(양잠)	"	신병각(잠종)
"	류성선(양잠)	"	이대석(생사)
"	유원조(양잠)	"	최철수(생사)
"	김교남(양잠)	"	한승희(생사)
"	최정규(양잠)	감사	김영철
"	조세룡(양잠)	"	임병선

3. 대한잠사회 현재 기구조지도



○관 리 본 부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6 더하우스소호(301호) ☎02)783~6071~5

www.silktopia.or.kr , E-mail : silkasn@chollian.net

○잠업진흥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청주역로213-5 ☎043)236~1321~3

4. 대한잡사회 년도별 회계결산현황(2001~2019)

년도별	수입결산	지출결산	비고
2001년	1,467,198천원	1,289,709천원	
2002년	5,745,297천원	5,524,669천원	동충하초사업비차입
2003년	6,273,536천원	5,647,409천원	박물관(국고.지자체지원)
2004년	3,420,112천원	3,245,146천원	박물관(국고.지자체지원)
2005년	2,119,496천원	2,092,397천원	
2006년	2,362,071천원	2,247,719천원	
2007년	1,995,510천원	1,990,564천원	
2008년	2,245,405천원	2,139,485천원	
2009년	2,358,403천원	2,155,104천원	
2010년	2,510,424천원	2,468,589천원	
2011년	2,312,719천원	2,307,494천원	
2012년	2,405,522천원	2,341,966천원	잡업기반유지사업 차입
2013년	2,337,018천원	2,195,811천원	
2014년	2,896,217천원	3,042,995천원	재건축사업비 차입 (회관 입주사 임대보증금 지급)
2015년	1,667,393천원	1,547,087천원	재건축사업비 차입
2016년	5,053,063천원	4,781,618천원	재건축사업비 예산포함
2017년	12,031,517천원	11,865,137천원	재건축사업비 예산포함
2018년	16,510,842천원	15,079,992천원	재건축사업비 예산포함
2019년	3,585,122천원	3,633,198천원	수익사업(임대사업)



편집 후기

대한잡사회는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지나온 100년 동안의 양잠산업을 되돌아 보고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취지로 창립100주년 기념집 “蠶絲 100년 가치와 도약”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간된 대한잡사회 25년사, 대한잡사회 80년사, 한국잡업사 등에서 언급된 내용과 중복을 가급적 피하고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과거를 재조명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미래 100년의 양잠산업을 과학적인 측면에서 설계해 보았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지나온 100년과 나아갈 100년을 설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득이 구한말부터 1994년까지 누에고치 산업의 잡산업을 지나온 100년의 가치로 설정하였고 1995년 이후부터 기능성양잠산업의 미래를 100년의 도약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편집회의에서 집필방향을 설정하기는 하였지만 집필진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이야기해 주실 선배님들도 많이 안 계시고 미래 100년을 준비할 후배 전공자들의 인프라도 거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대한잡사회 100주년 기념집 발간은 잡업발전위원회(19.7.9)에서 의결하였으며, 편찬위원회 구성(19.7.29)은 정지연, 류강선, 박재명, 박민식 4명을 출발하여 집필방향, 목차, 집필내용, 집필자추천 및 원고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정지연고문님과 박재명전무님이 운명을 달리 하시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편집위원장은 임석종회장, 위원은 류강선, 강석우, 박민식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두 분의 역사적 고증은 살아 계실 때 틈틈이 알려주신 내용을 최대한 수록하였습니다. 본문 5편과 부록으로 100주년 기념집을 10월 15일 잡사회 창립기념일에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기념집의 감수는 김영진 농업사학회 명예회장께서 역사적 내용을 중점으로 감수해주셨으며, 김한수고문님은 우리나라의 잡업정책과 발전과정 등을 그리고 김원근본부장은 대한잡사회의 역사적 사실들을 중점적으로 감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잡사회 산하 4개 단체의 원고를 작성해 주신 회장 및 직원들도 그동안의 자료들을 정리해주시는데 많은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렵게 만든 100주년 기념집이 미래 세대들에게 많이 읽혀지는 책이 되어 양잠산업 발전의 우수한 정책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기능성양잠산업이 나아갈 방향 등에서 새로운 양잠산업 발전의 모멘텀이 되어주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2020년 12월 25일

편집위원장 대한잡사회 회장 임 석 종

대한잡사회 창립 100주년기념집 **잡사 100년 가치와 도약** 집필진

편집위원장 임석중 대한잡사회 회장
편집 위원 류강선 대한잡사회 이사
편집 위원 강석우 전 농촌진흥청 과장
편집 위원 박민식 대한잡사회 사보 편집위원
자 문 (고)정지현 전 농림부 잡업과장
자 문 (고)박재명 여주잡사문화 박물관장

.....
집 필 진 임석중 (대한잡사회 회장)
집 필 진 김한수 (대한잡사회 고문)
집 필 진 채대석 (전 국립생사검사소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소장)
집 필 진 백영현 (전 농림부 잡업과 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과장)
집 필 진 류강선 (대한잡사회 이사)
집 필 진 강석우 (전 농촌진흥청 과장)
집 필 진 지상덕 (국립농업과학원 잡사양봉소재과 기술서기관)
집 필 진 강필돈 (전 농촌진흥청 과장)
집 필 진 성규병 (전 농촌진흥청 연구관)
집 필 진 권해용 (국립농업과학원 잡사양봉소재과 연구관)
집 필 진 김민욱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과 과장)
집 필 진 이만영 (국립농업과학원 잡사양봉소재과 과장)
집 필 진 홍혜자 (대한잡사회 본부장)
집 필 진 송기택 (한국양잠연합회 회장)
집 필 진 배재곤 (한국상모협회 총무)
집 필 진 신병각 (한국잡종협회 이사)
집 필 진 조동희 (한국생사수출입조합 전무)
집 필 진 박민식 (대한잡사회 실크로드 편집실)-----이상 총 18명

.....
감 수 자 김영진 농업사학회 명예회장
감 수 자 김한수 대한잡사회 고문
감 수 자 김원근 전 대한잡사회 본부장

대한잠사회

창립100
주년
기념집

Korea
Sericultural
Association

100년
가치와 도약

사단법인 **대한잠사회**
www.silktopia.or.kr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6
- 잠업진흥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청주역로 213-52
- 이메일 : silkasn@chol.com





발행처 및 발행인

**대한잠사회 창립 100주년기념집
잠사 100년 가치와 도약**

2020년 12월 25일 인쇄

2020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처 대한잠사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6

발행인 임석중

